

광주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52583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피 고 1. I

2. J

3. K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김성일, 송재성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구용, 이영정

변 론 종 결 2022. 11. 8.

판 결 선 고 2022. 12. 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7. 9. 21. 접수 제237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 5. 30.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L(2019. 5. 27. 사망)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은 원고 G, H이 각 1/14,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4이다.

나. 피고들은 망 M(2015. 8. 14.)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은 피고 I가 3/7, 피고 J, K이 각 2/7이다.

다. 망 M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2007. 9. 21. 납골당 분양사업을 준비하던 원고 F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7. 12.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 L 등은 같은 날 주채무자인 원고 F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보증하였다.

라. 망 L은 2007. 9. 21. 망 M에게 피담보채권을 위 연대보증채권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망 L으로, 채권자를 망 M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은 2021. 3. 2. 망 L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08621호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9. 21. ‘피고들의 주채무자인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대여금의 최종 변제일인 2012. 5. 30.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채무자인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최종 변제일인 2012. 5. 30.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7. 5. 30.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 또한 같은 날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채권은 민사채권이고,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아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 5. 30.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성준

별지